



국립학교 설치령

[시행 2021. 3. 1.] [대통령령 제31506호, 2021. 2. 26., 일부개정]

교육부 (국립대학정책과) 044-203-6951, 044-203-6808

교육부 (혁신행정담당관) 044-203-6064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교육기본법」 제11조제1항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조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18조·제19조에 따라 국가가 설립·경영하는 학교의 설치·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5. 2. 28., 2009. 2. 27.>

제2조(적용범위)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조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학교(이하 "학교"라 한다)의 설치 및 조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 <개정 2005. 2. 28.>

제3조(명칭 등) 교육부장관의 관할 아래 두는 학교의 명칭·소재지 및 과정은 별표 1과 같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

제4조(공무원의 정원)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조(학교의 장) ① 대학·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에 총장을, 특수학교에 교장을 각각 둔다. <개정 2009. 9. 3., 2012. 2. 29., 2012. 5. 23., 2013. 3. 23.>

② 총장 및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,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. <개정 2009. 9. 3., 2019. 7. 2.>

제5조(학교의 장) ① 대학 및 교육대학에 총장을, 특수학교에 교장을 각각 둔다. <개정 2009. 9. 3., 2012. 2. 29., 2012. 5. 23., 2013. 3. 23., 2022. 11. 8.>

② 총장 및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,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. <개정 2009. 9. 3., 2019. 7. 2.>

[시행일: 2023. 3. 1.] 제5조

제5조의2(부총장) ① 대학 및 교육대학에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해당 대학 및 교육대학의 교수 중에서 부총장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09. 2. 27., 2012. 2. 29.>

② 부총장은 대학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사 등 일부의 권한에 대하여 총장의 위임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한다.

③ 부총장은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신설 2009. 2. 27.>

[본조신설 2006. 2. 28.]

제6조(단과대학 등) ① 학교규칙(이하 "학칙"이라 한다)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대학은 단과대학 및 대학원을, 교육대학은 대학원을 각각 둘 수 있다. <개정 2009. 2. 27., 2012. 2. 29.>

② 대학의 단과대학(단과대학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학을 말한다) 및 대학원에 학과 및 학부를, 교육대학 및 그 대학원에 학과를, 전문대학에 학과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05. 2. 28., 2012. 2. 29.>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과대학·대학원·학과 및 학부에 장을 각각 두되,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, 학과 및 학부의 장은 교수·부교수 또는 조교수 중에서 둔다. 다만,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장은 다른 대학원의 장이나 관련 단과대학 또는 학부의 장 중에서 둘 수 있다. <개정 2009. 2. 27.>

④대학의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총장의, 학과 및 학부의 장은 단과대학의 장(단과대학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장을 말한다)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·대학원·학과 및 학부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, 학생을 지도한다.<개정 2005. 2. 28., 2012. 2. 29., 2019. 7. 2.>

⑤ 삭제<2005. 2. 28.>

⑥교육대학의 대학원의 장은 총장의, 학과의 장은 총장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당해 대학원 및 학과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, 학생을 지도한다.<개정 2019. 7. 2.>

⑦전문대학의 학과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해당 학과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, 학생을 지도한다.<개정 2009. 9. 3., 2019. 7. 2.>

제6조(단과대학 등) ① 학교규칙(이하 "학칙"이라 한다)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대학은 단과대학 및 대학원을, 교육대학은 대학원을 각각 둘 수 있다. <개정 2009. 2. 27., 2012. 2. 29.>

②대학의 단과대학(단과대학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학을 말한다) 및 대학원에 학과 및 학부를, 교육대학 및 그 대학원에 학과를 둘 수 있다.<개정 2005. 2. 28., 2012. 2. 29., 2022. 11. 8.>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과대학·대학원·학과 및 학부에 장을 각각 두되,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, 학과 및 학부의 장은 교수·부교수 또는 조교수 중에서 둔다. 다만,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장은 다른 대학원의 장이나 관련 단과대학 또는 학부의 장 중에서 둘 수 있다.<개정 2009. 2. 27.>

④대학의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총장의, 학과 및 학부의 장은 단과대학의 장(단과대학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장을 말한다)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·대학원·학과 및 학부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, 학생을 지도한다.<개정 2005. 2. 28., 2012. 2. 29., 2019. 7. 2.>

⑤ 삭제<2005. 2. 28.>

⑥교육대학의 대학원의 장은 총장의, 학과의 장은 총장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당해 대학원 및 학과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, 학생을 지도한다.<개정 2019. 7. 2.>

⑦ 삭제<2022. 11. 8.>

[시행일: 2023. 3. 1.] 제6조

제7조(부속시설 등) ①대학(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15조에서 같다)에 「대학설립·운영 규정」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·연구시설·부속시설 및 그 밖의 필요한 시설(이하 "부속시설등"이라 한다)을, 특수학교에 필요한 실습시설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14., 2009. 2. 27., 2012. 2. 29., 2013. 3. 23.>

②부속시설등의 장은 관련 단과대학·대학원·학과 또는 학부의 장 중에서 두되,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.<개정 2006. 2. 28., 2009. 2. 27., 2009. 9. 3.>

③부속시설등의 장은 총장,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한다.<개정 2009. 2. 27., 2009. 9. 3., 2019. 7. 2.>

④총장은 부속시설등의 시설 중 「대학설립·운영 규정」 제4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·부속시설(공통시설을 제외한다)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해당 시설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존속 또는 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정한다.<개정 2008. 2. 14., 2009. 2. 27., 2009. 9. 3.>

제7조(부속시설 등) ①대학(교육대학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15조에서 같다)에 「대학설립·운영 규정」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·연구시설·부속시설 및 그 밖의 필요한 시설(이하 "부속시설등"이라 한다)을, 특수학교에 필요한 실습시설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14., 2009. 2. 27., 2012.

2. 29., 2013. 3. 23., 2022. 11. 8.>

②부속시설등의 장은 관련 단과대학·대학원·학과 또는 학부의 장 중에서 두되,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.<개정 2006. 2. 28., 2009. 2. 27., 2009. 9. 3.>

③부속시설등의 장은 총장,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한다.<개정 2009. 2. 27., 2009. 9. 3., 2019. 7. 2.>

④총장은 부속시설등의 시설 중 「대학설립·운영 규정」 제4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·부속시설(공통시설을 제외한다)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해당 시설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존속 또는 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정한다.<개정 2008. 2. 14., 2009. 2. 27., 2009. 9. 3.>

[시행일: 2023. 3. 1.] 제7조

제8조(부설학교) ①대학의 사범계 단과대학(이하 이 조에서 “사범대학”이라 한다), 교육대학에 별표 5의 학교를 부설한다. <개정 2009. 9. 3.>

②제1항에 따른 부설학교에 장을 각각 두되, 부설학교의 장은 사범대학의 장 또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해당 학교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, 학생 또는 원생을 지도한다.<개정 2009. 9. 3., 2019. 7. 2.>

제9조(대학의 하부조직) ①대학에 사무국·행정본부(강원대학교·경북대학교·경상국립대학교 및 전남대학교로 한정한다)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·실·본부·단 등의 하부조직을 두되,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·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, 행정본부장은 부이사관·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사서사무관·공업사무관·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하고, 처·실·본부·단 등의 하부조직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보한다. 이 경우 행정본부장의 명칭에 관하여는 총장이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06. 2. 28., 2006. 6. 30., 2007. 2. 28., 2008. 2. 14., 2009. 2. 27., 2012. 2. 29., 2020. 3. 31., 2021. 2. 26.>

②사무국장은 별표 7의 사무를 분장하고, 처·실·본부·단 등의 하부조직의 장의 분장사무는 학칙으로 정한다.<개정 2009. 2. 27., 2020. 3. 31.>

③부속시설등과 제1항에 따른 사무국 및 처·실·본부·단 등의 하부조직에 별표 6의 범위에서 과 및 담당관을 둔다. 이 경우 과 및 담당관의 명칭에 관하여는 총장이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09. 2. 27., 2020. 3. 31.>

④과장 및 담당관은 부이사관·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사서사무관·공업사무관·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. 다만, 학생실습과 선박운항을 담당하는 과장 및 담당관은 교수·부교수 또는 조교수 중에서 둘 수 있고, 부속시설에 두는 과장 및 담당관은 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사서사무관·임업사무관·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.<개정 2006. 2. 28., 2007. 2. 28., 2009. 2. 27.>

⑤대학의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별표 8의 범위에서 행정실을 두되, 실장은 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사서사무관·임업사무관·해양수산사무관·공업사무관·시설사무관·농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. 다만, 2개 이상의 단과대학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통합하여 둘 수 있다.<개정 2006. 2. 28., 2007. 2. 28., 2009. 2. 27., 2009. 9. 3.>

제10조 삭제 <2004. 3. 5.>

제11조 삭제 <2012. 2. 29.>

제12조 삭제 <2012. 2. 29.>

제13조(교육대학의 하부조직) ① 교육대학에 총무처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·실·본부·단 등의 하부조직을 두되, 총무처장은 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·사서사무관·임업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하고, 그 외의 처·실·본부·단 등의 하부조직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둔다. <개정 2004. 10. 29., 2006. 2. 28., 2007. 2. 28., 2009. 2. 27., 2020. 3. 31.>

② 총무처장은 별표 7의 사무를 분장하고, 그 외의 처·실·본부·단 등의 하부조직의 장의 분장 사무는 학칙으로 정한다.<개정 2020. 3. 31.>

제14조(전문대학의 하부조직) ① 전문대학에 총무처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·실·본부·단 등의 하부조직을 두되, 총무처장은 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·사서사무관·임업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하고, 그 외의 처·실·본부·단 등의 하부조직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둔다. <개정 2004. 10. 29., 2006. 2. 28., 2007. 2. 28., 2009. 2. 27., 2020. 3. 31.>

② 총무처장은 별표 7의 사무를 분장하고, 그 외의 처·실·본부·단 등의 하부조직의 장의 분장 사무는 학칙으로 정한다.<개정 2020. 3. 31.>

제14조 삭제 <2022. 11. 8.>

[시행일: 2023. 3. 1.] 제14조

제15조(월정직책급 등) 제5조의2, 제6조, 제7조, 제9조,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교수·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겸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 교수·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봉급·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총액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계상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직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09. 9. 3., 2012. 2. 29.>

[제목개정 2009. 9. 3.]

제15조(월정직책급 등) 제5조의2, 제6조, 제7조,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교수·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겸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 교수·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봉급·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총액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계상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직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09. 9. 3., 2012. 2. 29., 2022. 11. 8.>

[제목개정 2009. 9. 3.]

[시행일: 2023. 3. 1.] 제15조

제16조(학비보조 등) ① 대학의 학사과정 간호계 학과 또는 학부의 제3학년 이상의 학생은 재학중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이들 학생에 대하여는 기숙사비·피복비 및 그 밖의 학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급한다.

② 한국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, 목포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, 한국체육대학교의 체육학과 및 경기지도과의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.<개정 2012. 2. 29., 2015. 2. 3.>

③ 한국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, 목포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, 한국체육대학교의 체육학과 및 경기지도과의 학생은 재학중 승선생활관 또는 생활관에 입관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한국해양대학교 및 목포해양대학교의 학생에 대하여는 승선생활관비·피복비 및 그 밖의 학비를, 한국체육대학교의 학생에 대하여는 생활관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.<개정 2012. 2. 29.>

④ 한국해양대학교·목포해양대학교 및 한국체육대학교의 총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선생활관 또는 생활관에 입관한 학생중 우수해기사 또는 체육지도자 양성대상자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생활관 또는 생활관에서 퇴관시킬 수

있다.

⑤ 한국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, 목포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학생은 재학중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실습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실습비는 국고에서 지급한다.<개정 2012. 2. 29.>

⑥ 승선실습 기간 중 실습선에 승선 근무하는 경상국립대학교·군산대학교·목포해양대학교·부경대학교·전남대학교·제주대학교 및 한국해양대학교의 교직원과 학생에 대해서는 식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.<개정 2006. 2. 28.,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21. 2. 26.>

⑦ 한국교통대학교의 항공운항학과 학생은 재학 중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행실습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실습비는 국고에서 지급한다.<신설 2020. 3. 31.>

⑧ 교육대학의 야간 또는 계절제 학생으로 수학하는 현직 교원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한다.<개정 2020. 3. 31.>

⑨ 한국복지대학교의 학생 중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.<신설 2002. 2. 4., 2012. 8. 31., 2015. 2. 3., 2020. 3. 31.>

⑩ 삭제<2013. 3. 23.>

⑪ 삭제<2013. 3. 23.>

⑫ 특수학교의 학생은 재학중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⑬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, 기숙사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.<개정 2002. 2. 4.>

제16조(학비보조 등) ① 대학의 학사과정 간호계 학과 또는 학부의 제3학년 이상의 학생은 재학중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이들 학생에 대하여는 기숙사비·피복비 및 그 밖의 학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급한다.

② 한국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, 목포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, 한국체육대학교의 체육학과 및 경기지도과의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.<개정 2012. 2. 29., 2015. 2. 3.>

③ 한국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, 목포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, 한국체육대학교의 체육학과 및 경기지도과의 학생은 재학중 승선생활관 또는 생활관에 입관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한국해양대학교 및 목포해양대학교의 학생에 대하여는 승선생활관비·피복비 및 그 밖의 학비를, 한국체육대학교의 학생에 대하여는 생활관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.<개정 2012. 2. 29.>

④ 한국해양대학교·목포해양대학교 및 한국체육대학교의 총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선생활관 또는 생활관에 입관한 학생중 우수해기사 또는 체육지도자 양성대상자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생활관 또는 생활관에서 퇴관시킬 수 있다.

⑤ 한국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, 목포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학생은 재학중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실습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실습비는 국고에서 지급한다.<개정 2012. 2. 29.>

⑥ 승선실습 기간 중 실습선에 승선 근무하는 경상국립대학교·군산대학교·목포해양대학교·부경대학교·전남대학교·제주대학교 및 한국해양대학교의 교직원과 학생에 대해서는 식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.<개정 2006. 2. 28.,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21. 2. 26.>

⑦ 한국교통대학교의 항공운항학과 학생은 재학 중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행실습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실습비는 국고에서 지급한다.<신설 2020. 3. 31.>

⑧ 교육대학의 야간 또는 계절제 학생으로 수학하는 현직 교원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한다.<개정 2020. 3. 31.>

⑨한경국립대학교의 학생 중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.
.<신설 2002. 2. 4., 2012. 8. 31., 2015. 2. 3., 2020. 3. 31., 2022. 11. 8.>

⑩ 삭제 <2013. 3. 23.>

⑪ 삭제 <2013. 3. 23.>

⑫특수학교의 학생은 재학중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⑬제1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, 기숙사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.<개정 2002. 2. 4.>

[시행일: 2023. 3. 1.] 제16조

제17조(학비보조금의 지급정지) 대학의 간호계 학과 또는 학부, 한국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, 목포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, 한국체육대학교의 체육학과 및 경기도지도과의 학생이 휴학하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학을 당한 때에는 그 기간중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비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. <개정 2004. 12. 30., 2008. 2. 14., 2012. 2. 29., 2012. 5. 23., 2013. 3. 23.>

제18조(복무의무) ①한국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, 목포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, 한국체육대학교의 체육학과 및 경기도지도과의 졸업자는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각각 교육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직무에 복무할 의무가 있다. 다만, 교육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2. 2. 29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>

②한국체육대학교의 체육학과 및 경기도지도과의 학생과 그 졸업자로서 복무의무기간중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, 교육부장관은 그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의 수업연한 기간동안 복무의무를 유예할 수 있다.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

③ 삭제 <2004. 12. 30.>

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기간중 휴직 또는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그 휴직 또는 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.<개정 2004. 12. 30.>

⑤ 삭제 <2004. 12. 30.>

⑥ 삭제 <2013. 3. 23.>

제19조(학비보조금의 상환) ①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의무를 지는 자가 그 복무의무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서 지급받은 학비보조금을 상환하여야 한다.

1.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

2. 파면처분을 당한 때

②한국체육대학교의 체육학과 및 경기도지도과의 학생으로서 퇴학하는 자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서 지급받은 학비보조금을 상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총장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.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

③ 삭제 <2013. 3. 23.>

④ 삭제 <2013. 3. 23.>

제20조(경비부담 등) ①이 영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. <개정 2004. 12. 30., 2007. 2. 28., 2008. 2. 14., 2008. 2. 29., 2009. 2. 27., 2011. 2. 25., 2012. 2. 29., 2012. 5. 23., 2013. 3. 23.>

② 삭제 <2013. 3. 23.>

제21조 삭제 <2013. 3. 23.>

제22조(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) ① 각 학교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.

②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<개정 2005. 2. 28., 2009. 2. 27.>

1. 단과대학·대학원·학과 및 학부의 설치
2. 부설학교·부속시설등 및 실습시설의 설치
3. 하부조직(단과대학·대학원 및 부속시설등에 두는 하부조직을 포함한다)과 그 분장사무
4. 그 밖에 조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③ 학교의 장은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조직 및 인력배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종합적·체계적으로 정하되,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